

##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 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 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 ②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 ③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신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예타제도 대폭 개편,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현장과 소통하여 후속조치 속도감 높일 것”을 주문

기획예산처는 '26.3.10.(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 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①균형성장 투자 유도, ②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③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 ① 균형성장 투자 유도 >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ex.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하여 우대**(ex. 우선선정 등)한다.

### < ②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

두 번째로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을 통과 여부 외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하여 수행기간을 단축(9→6개월)한다. **경제성 분석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및 교통사고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

### < ③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 >

끝으로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예타 대상,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500억원)하고, **HW 및 SW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기준을 정밀화**한다. 예타 신청 前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운영 및 예타대상 선정, 조사 등 예타 소 과정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조사를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내실화한다.

### [ ②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오늘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연장하여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여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산신항만에서 동해측으로 이동하는 철도물류 운송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 [ ③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사업노선 주변의 도로 및 버스 혼잡을 낮추고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 모란차량기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 구간(L=3.8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신례리~수산리)**은 제2공항 접근성 향상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성산읍 수산리(L=32.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은 복잡·대형화되는 해양재난,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체계 정립을 위해 충남 당진에 재직자 중심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과학문화 거점 조성을 위해 전북 김제시에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과 재생에너지·해양신산업을 결합한 미래해양도시의 모습을 전시·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인원·세수 증가에 따른 세정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업무 효율화 등 세정업무 전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19.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하였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강미자 (044-214-3310)
	타당성심사과	담당자	서기관	조문경 (keepange188@korea.kr)
			사무관	김이현 (spacer@korea.kr)
			사무관	이세환 (lshwan@korea.kr)
			사무관	정재우 (zeus7009@korea.kr)
			주무관	윤종현 (upyjh1015@korea.kr)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2026. 3.



# 순서

I. 추진 배경 .....	1
II. 기본 방향 .....	2
III. 현황 및 추진방안	
1. 균형성장 투자 유도 .....	3
2.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	5
3.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	7
IV. 향후 추진계획 .....	10



## I. 추진 배경

- 예타 도입('99년) 이후 총 1,064개(551.7조원) 사업 예타 수행 → 타당성 낮은 382개 사업(209.3조원)을 선별,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
  - \* 예타 도입 前('94~'98) 부처 자체 타당성조사 통과율: 97%(33건중 1건 미통과)
  - 예타 도입 이후('99~'25.12) 예타 통과율: 64.1%(1064건 중 382건 미통과)
- 공공부문 전반\*에 공적 조사과정 확산
  - \* 공공기관 사업('11), 지방투자사업('14), 간접적 재정지출인 조세특례('14)
- 국가 아젠다에 부응하기 위해 '계량화된 경제성(B/C)과 비계량 가치\*' 사이의 최적점을 모색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
  - \* 지역 균형 및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 \*\* 기준 규모가 25년째 유지되는 4동안 GDP는 4.2배, 물가는 1.7배 확대
-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정성적 지표 비중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 국가 아젠다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적기 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
  - \* 정책적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가치 반영 불충분, 예타 조사에 1~2년 소요 등
- 재정 운용 과정에서 예타 제도의 성과와 역할을 분석·재검토하여 제도 혁신방안 마련
  - (균형 성장) 인구감소지역 특별고려, 균형성장평가 신설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
  - (국가아젠다) 사업 유형·분야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인 국가아젠다 대응 효과를 충분히 평가
  - (예타 기능) 전문적인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

## II. 기본 방향

『방어적 재정 지킴이』 ⇨ 『전략적 재정 운용자』로 확장

- 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유도
- ②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 평가하여 국가아젠다 추진을 뒷받침
- ③ 평가기준 현실화, 컨설팅 기능 신설 등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 추진 방향

### 중점 추진과제

① 균형성장  
전략적 투자  
유도

- ①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 ② 균형성장평가 항목 신설
- ②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 활용

②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 ① 사업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 ② 정보화 평가방식 개편
- ③ 경제성 분석에 새로운 편익 반영 강화

③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 ① SOC 예타 대상기준 상향
- ② 노후화된 SW·HW 단순 대체사업 예타 면제 신설
- ③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 신설
- ④ 분석기준 정밀화
- ⑤ 컨설팅 기능 신설 및 조사기관 확대

### Ⅲ. 현황 및 추진방안

#### 1. 균형성장 전략적 투자 유도

##### ①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 (현황)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함에도 ‘비수도권 內’, ‘수도권 內’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 접경·도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未평가, 수도권 內 균형성장 평가에 한계

- (개편)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구분하여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성 가중치  $\Delta 5\%p$ , 지역균형 가중치  $+5\%p$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89개 시군구

- 수도권 사업도 사업추진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성 가중치  $\Delta 5\%p$ , 균형성장 평가(5% 이내) 신설

\* 다만, 수도권 지역은 ‘지역낙후도’는 未평가

<참고> 개편방향에 따른 비수도권 가중치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	인구감소 지역
① 경제성	60 ~ 70%	30 ~ 45%	55 ~ 70%	30 ~ 45%	30 ~ 40%
② 정책성	30 ~ 40%	25 ~ 40%	30 ~ 40%	25 ~ 40%	25 ~ 40%
③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성장	-	30 ~ 40%	5% 이내	30 ~ 40%	30 ~ 45%

##### ② 균형성장평가 항목 신설

- (현황) 지역 성장을 촉진할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평가 미흡
  - 현행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①지역낙후도, ②낙후도 개선효과, ③지역경제 파급효과만을 정량지표에만 의존하여 평가

① 인구증감률·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 균형발전지표(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른 지역별 점수

②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③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공사비 투입의 지역경제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

- 관련 지표 外 정성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 평가는 곤란

\* (예시) 해당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와 지역의 기존 역사 유적지를 연계함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가능성 등

□ (개편) ‘균형발전효과’를 「균형성장효과」 로 확대 개편

○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결합하여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정량+ 정성)

- 평가영역(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을 설정, 도로·철도, 문화·관광, 산업인프라 등 유형별 검토방향을 제시

<참고> 문화·관광 분야 사업의 평가 내용 예시

(현행) 지역균형발전	(개편) 지역균형성장					
1.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현행과 동일)					
2. 균형발전효과	2. (확대개편) 균형성장효과					
2-1. 지역낙후도개선효과 사업체 수 증감률, 종사자 수 증감률,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정량</td> <td>좌동</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신설) 정성</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 <b>지역 특수성</b>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 및 차별성,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존재 여부(작가·예술단체·전시공간·창작기반 등)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 <b>미래 성장잠재력</b>                문화·콘텐츠 산업(전시·공연·영상 등)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국제행사·지역축제 등 지속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이벤트 잠재력             </td> </tr> </table>	정량	좌동	(신설) 정성	<b>지역 특수성</b>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 및 차별성,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존재 여부(작가·예술단체·전시공간·창작기반 등)	<b>미래 성장잠재력</b> 문화·콘텐츠 산업(전시·공연·영상 등)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국제행사·지역축제 등 지속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이벤트 잠재력
정량	좌동					
(신설) 정성	<b>지역 특수성</b>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 및 차별성,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존재 여부(작가·예술단체·전시공간·창작기반 등)					
	<b>미래 성장잠재력</b> 문화·콘텐츠 산업(전시·공연·영상 등)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국제행사·지역축제 등 지속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이벤트 잠재력					
2-2.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의 산업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	(정책효과-경제적파급효과로 이동)					

③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 활용

□ (현황) 예타 대상 선정 및 면제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

- (개편)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 (ex. 탁월)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하여 우대
  - \*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지방시대위원회, '27년 도입예정)
- (우선선정)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시 예타대상 선정
  - \* (예시) 예타선정요건 중 ①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사업추진 시급성, ③지역균형발전 요인은 균형성장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된 것으로 같음
-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해 면제
  - \*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 ② 10호)

## 2.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 ① 사업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 (현황) 획일적·경직적인 정책성(정성) 평가로 사업특성 반영에 한계
  -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SOC 사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사회·문화·산업 분야 다양한 특성 반영이 어려움
    - \* 일자리·생활여건·환경성·안전성·사업특화항목
  - 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책효과는 5개 항목 중 하나(사업특화항목)로만 제시·평가 가능
- (개편) 사업별 특별한 목적과 특성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 항목을 개방
  -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산업 등 다양한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를 제시·평가
    - \* (예시)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형성, 연관산업육성, 부가가치 유발 등
  - (사회적 파급효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를 제시·평가
    - \* (예시) 취약계층 이용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및 문화 접근성 개선 등
  - (환경적 파급효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저감 대책 등 제시·평가
    - \* (예시) 건설 또는 운영 중 발생가능한 환경 훼손 영향, 저감 대책 등

## ② 정보화 평가방식 개편

- **(현황)** 공공부문의 AI 확산을 위해 정보화 사업의 적기투자 필요하나, 현행 예타는 AI 등 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평가에 한계\*
  - \* 편익(의사결정의 고도화 등)의 정량화가 어려워 경제성 분석(B/C)시 한계
- **(개편)** 경제성 평가시 E/C(비용효과분석)를 기본으로 하고, ISP 사전검토\*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예타 수행기간 단축(9→6개월)
  - \* ISP 사전검토 : 기술 적용 계획의 적정성, 타사업과의 중복·연계성 등 검토
  - \*\* ISP 사전검토 평가영역과 예타 평가항목을 매핑하여 항목별 확인·검증
- 통과여부 외 대안·보완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
  - \* 사업추진 여건,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 → 각 영역별 점수화

<참고> 정보화 예타 개편안(예시)

	현행	개편
목적	사업 추진의 타당성(시행여부) 판단	사업 시행여부 + 대안 또는 보완사항 제시
조사·평가항목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업무요구 부합성 등) 경제성 분석(원칙적 B/C, 필요시 E/C)	사업추진 여건 사업설계 적정성(사업요구범위 설계의 적정성 등) 경제성 분석(원칙적 E/C, 필요시 B/C)
결과	종합평가(AHP) → 타당성 유무	항목별 점수 합산 → 원안추진, 조건부추진 또는 사업재기획(재평가 필요)

## ③ 경제성 분석에 새로운 편익 반영 강화

- **(현황)** 편익의 종류와 크기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
  - 기후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저감 편익의 반영 대상·크기가 제한적
  - 교통사업 주요 편익의 단위당 화폐적 가치 산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치 반영이 불충분
  - \* '15년(환경비용·교통사고·차량운행), '16년(통행시간절감 비용)

- (개편) 경제·사회 발전 등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편익 항목, 단위당 화폐가치를 갱신
  - 오염저감의 새로운 편익\*을 검토하고, 기존 편익의 단위당 화폐가치를 갱신
    - \* (기존) CO, CO<sub>2</sub>,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NOX, PM<sub>2.5</sub>(초미세먼지) → (추가) SO<sub>x</sub>, NH<sub>3</sub> + 비배기·비산먼지(PM<sub>10</sub>(미세먼지), TSP(부유먼지))
  - 사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비용 현실화, 지하도로 상부 개발효과 등 새로운 편익을 추가

### 3.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 ① SOC 예타대상기준 상향

- (현황) SOC 사업은 그간 평균 사업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 SOC사업은 그간의 사업비 상승폭이 큼
    - ↳ 예타 신청사업 평균금액(요구 기준, 억원): (SOC) ('05~'09) 4,894 → ('20~'24) 9,874 <+101.8%>
    - (건축) ('05~'09) 2,293 → ('20~'24) 2,399 < +4.6%>
- (개편)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비 300→500억원)
  - 1천억원 미만 →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 \* 최근 10년 SOC 예타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 사업 수 10.8%(17/158건)

#### ② 노후화된 SW·HW 단순 대체사업 예타면제 신설

- (현황) 노후 시스템·장비 재구축 사업의 편익은 기존 시스템 대비 운영비 절감액이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편익 산정이 곤란

□ (개편) HW·SW 노후화 등에 따른 시스템·장비 재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신설하여 사업추진 가속화

\* 단순개량 예타면제 규정(국가재정법 제38조② 5호)

(현행)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  
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개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  
순개량, 유지보수 및 노후 시스템·장비 재구축 사업(신설)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시 新舊시스템·장비 비용간 비교분석 수행

**③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 신설**

□ (현황) 사업추진 준비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부재

- 예타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평가,  
예타 과정에서는 정책 일치성,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만 평가

□ (개편)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준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을 신설

- 유사시설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인력·조직·콘텐츠 등)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지자체·공공기관 등) 등 평가

<참고> 사업추진 여건 및 준비정도에 대한 평가내용 개편 예시

<현행>	<개편>
<b>1. 예타대상 선정시</b>	<b>1. 예타대상 선정시</b>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노선 등 구체화 여부 판단	좌동
<b>2. 예타 조사시</b>	<b>2. 예타 조사시</b>
- 사업추진여건 : 정책 일치성,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사업에 대한 태도 등	- 사업추진여건 : 좌동
	- (신설)사업계획 적절성* : 운영계획(인력· 조직·콘텐츠 등)의 적절성,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등)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예시 : (SOC) 연계교통 활용 계획(환승체계 구축방안, 철도 신설시 버스노선 조정방안) 등  
(사회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계획, 수익모델 다각화방안, 홍보전략 등

#### 4 분석기준 정밀화

- (현황)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
  - 장래 교통수요(OD) 데이터 한계로 도로·철도 설계기준(100년)에 비해 분석기간(30년<sup>도로</sup>, 40년<sup>철도</sup>)이 과소
  - 예타 단계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 설계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감사원 감사(25.6)) :  
(일반철도) △39.0%p (일반도로) △28.1%p
- (개선) 경제성 분석기간 확대 검토, 교통시설 사업 공사비 현실화
  - 도로·철도사업의 장래 교통수요OD('50년 이후) 구축 및 적정 운영비 산정과 연계하여 경제성 분석기간 확대 검토
  - 최근 발주 사례 및 공사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단가 기준을 최신화 하고 사업유형별로 공종별 공사비 항목을 갱신(방음시설 등 추가)

#### 5 컨설팅 기능 신설 및 조사기관 확대

- (현황) 예타 선정부터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사과정의 대안 검토가 소극적, 예타 조사기관이 KDI·조세연으로 제한적
  - 예타 미선정의 구체적인 사유 미제시, 예타 과정에서 비용 절감 및 기술적 장애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대안 제시에 한정
- (개선) 예타 쏠 과정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
  -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 대안검토 의무화 및 예타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신설
    - \* 운영(안) : 부처가 사업기획 단계에서 의뢰 →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와 매칭
  - 재정사업·데이터 분석에 역량을 갖춘 기관(ex. 재정정보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 추진

<참고> 컨설팅 기능 신설(안)

	현행	개선
신청前	KDI 질의·답변	KDI 질의·답변 + 전문가 컨설팅단(신설)
선정	미선정사유 미제시	미선정사유 제시
조사	제한적 대안검토 (사업규모 축소 등)	적극적 대안검토 의무화(최적규모·형식 등)
조사後	타당성 확보 또는 미확보	타당성 확보 또는 미확보(재기획 방향 제시)

## IV. 향후 추진계획

### 주요 과제

### 추진 일정

#### 1. 균형성장 투자 유도

①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 지침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26.5) →'25년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②	균형성장평가 신설	
③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 활용	▶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27) →평가 완료시 적용

#### 2. 국가아젠다 뒷받침

①	사업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 지침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26.5) →'25년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②	정보화 평가방식 개편	▶ 지침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26.5) →'25년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③	경제성 분석에 새로운 편익 반영 강화	▶ 편익 일단위 갱신 및 신규편익 반영 검토('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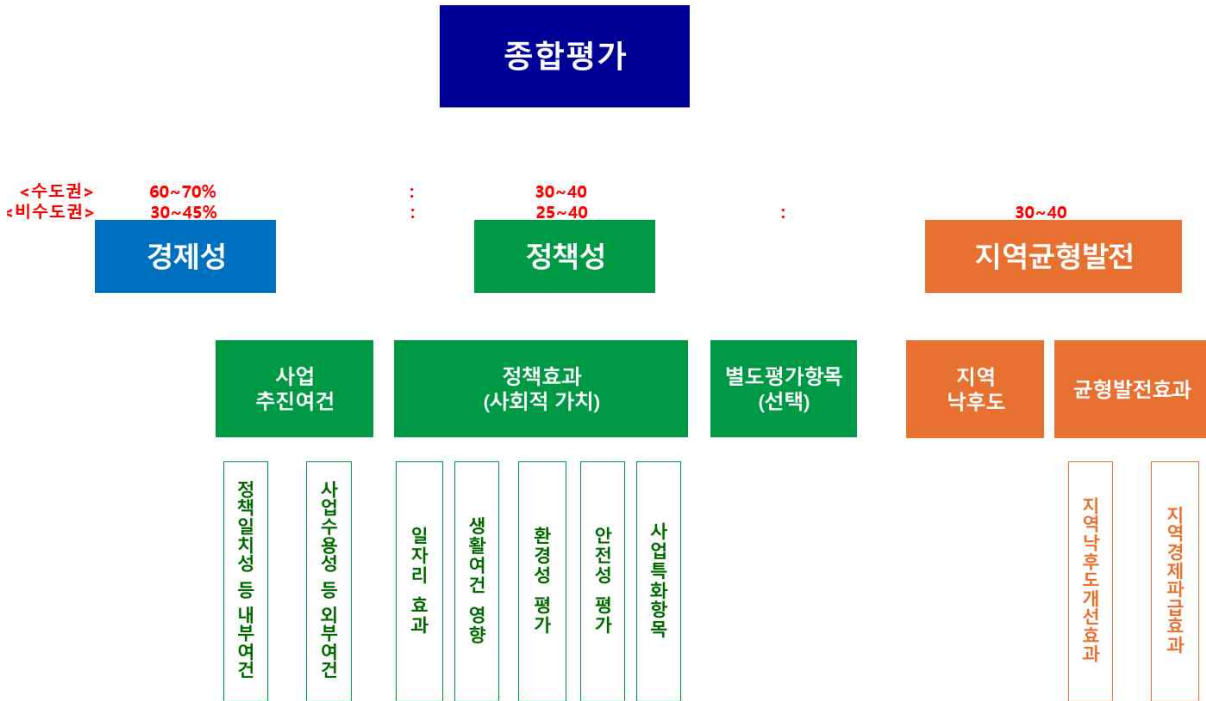
#### 3.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①	SOC 대상기준 상향	▶ 국가재정법 개정안 既발의('24)→ 개정안 시행이후 선정사업부터 적용
②	단순 대체사업 면제 신설	▶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26)→ 개정안 시행이후 선정사업부터 적용
③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 신설	▶ 지침개정('26.5) →'25년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④	분석기준 정밀화	▶ 장래 교통OD 등 구축('26.6. 국토부), →'26년 2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 공사비단가 최신화 지침개정(일반 철도·국도 '26上, 고속도로 '26下) →'26년 2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
⑤	컨설팅기능 신설 및 조사기관 확대	▶ 컨설팅단 신설('26 시범실시) ▶ 미선정사유 제시 등 지침개정('26.5)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 ▶ 조직·예산 등 기반마련('26) →'27년부터 본격 시행

# 참고

# 평가항목 개편(안)

<현행>



<개편>

